

5 - 43	불법 하도급 신고		
질의 일자	2017-06	회신 방법	국민신문고 민원
질의 내용			
○ 불법 하도급 신고 방법			
회신 내용			
○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재하도급은 금지되나,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 전기기자재를 제작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. ○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42조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, 동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 ○ 다만 형사 처벌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거쳐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며,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청문 절차를 거쳐 판단할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가까운 경찰서 및 관할 행정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			